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999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 3. 5.)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나. 시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4. 9. 26.~2024. 10. 16.(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AI국 AI데이터인프라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남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남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 · 감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 · 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 · 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 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 · 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 · 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하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정보통신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팀장 직위 · 성명	정보통신팀장 윤동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조용빈 (031-790-5523)

관계법령 발췌서

1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 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 외국단체 ·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 · 견제 ·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 · 범위 ·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 · 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협회는 제외한다.
4.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 · 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